

이동제한지역 외 오리농장 분뇨처리요령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2015. 03. 28)

AI 발생기간 중 전국 오리농장 분뇨반출 금지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아래와 같은 '이동제한지역 외 오리농장 분뇨처리요령'의 준용을 전제하여 농장 밖 이동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이동지역 외 오리농장 분뇨반출 허용

○ **처리방법** : '이동제한지역 내 닭 분뇨처리요령'에 준하는 차단방역 조치 이후 농장 외부 반출 허용

○ **적용기간** :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종식 시까지

○ 반출요령 :

① 시·군은 관할 오리농장 가축분뇨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제출하되 지역별, 농장별, 처리시설별 분뇨 운반 및 처리상황 관리 계획을 포함

* 시·군은 분뇨반출을 희망하는 오리농장을 사전에 신청(전화 또는 방문신청) 받아 관

리 대장에 포함

② 시·군은 관할 시군의 계획서를 검토하고 위험도 평가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승인하여 처리

③ 분뇨 반출처리를 희망하는 오리농장 인근에 위치하고 AI 발생지역 외에 위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활용

④ 가축방역관은 분뇨처리업체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오리분뇨 처리업체로 지정

* 다만 농가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보유할 경우 최대한 자체 처리한 후 보관하고, 외부 반출은 억제

⑤ 차량을 지정하여 1일 1농장 방문을 원칙으로 오리농장을 방문하되 닭, 오리 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은 오리농장을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

⑥ 분뇨차량은 AI 긴급행동지침의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가축분뇨처리요령'(붙임1) 철저히 준용하여 세척 및 소독 실시

⑦ 지자체는 가축방역관을 통해 분뇨반출요령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흡한 분뇨처리업체 및 농장은 분뇨반출 허용 금지 조치

[붙임 1]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가축분뇨처리요령

단계	소독관리 요령	
업체입차	차량	공장 입문 시 고압스팀 세차로 차량 바퀴 등에 부착된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한다.
	개인	개인 소독기내에서 개인 소독을 실시한다.
업체출차	차량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전상태를 점검한다.
	개인	1) 차량 내 비치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비치 상태를 확인한다. 2)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확인을 한다.
농장도착	차량/개인	1) 농장 출입 전 비닐장갑, 마스크, 방역복, 비닐장화를 착용한다. 2)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을 실시한다.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2차 소독을 실시한다.
농장출발	차량/개인	1) 농장 출문 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방역 지급용품 중 오염된 방역용품 및 1회용 방역용품은 지급된 비닐용기에 밀봉처리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 폐기 처리한다. 2) 농장 출문 시 개인용 소독기로 손, 의복, 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외부는 농장에 비치된 소독기를 통해 소독을 실시한다.
준수사항 (복장 등)	기타	1) 지급된 방역용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 오염 시 담당자로부터 즉시 재지급 받는다. 2) 농장내에서 가급적 농장관리 인원과 접촉하지 않는다. 3) 긴급상황 발생시(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 내 운행을 금지하며, 예찰지역 및 관리지역에 부득이하게 운행시 물류 책임자의 지시를 받는다.

※ 가축분뇨차량은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요령'에 따라 조치